

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38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1. 11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7조에 의거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(주요골자)

가. 위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
-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

나. 목적

- 한강의 역사적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·문화적 가치 재조명, 상징성 복원을 위해 건립된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의 효율적·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(법인·단체)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함

다. 민간위탁 개요

- 위탁기간 : 2022. 1. ~ 2024. 12.(3년)
- 위탁대상
 -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·관리

- 인력운영 : 4명
- 위탁금 : 연 208백만원, ※ 붙임 산출내역 참조
 ※ 위탁금은 연도별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다. 위탁시설 및 규모

- 시원지 체험관 : 건물(지하 1층, 지상 2층, 연면적 987.94㎡)
 - 전시실(784.03), 다도체험실(138.34), 사무실(65.57)
 - 대지 : 4,991㎡

라. 추진계획

-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안 심의 : 2021. 12월
-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적격자 심사 : 2021. 12월
- 위탁협약 체결 : 2022. 1월

마. 참고자료

- 민간위탁금 산출내역

(단위 : 원 / 년)

구 분	금 액(원)	비 고
합 계	208,400,000	
인 건 비	114,676,000	
사 무 관 리 비	38,528,000	
공 공 요 금 및 제 세	29,417,000	
시 설 장 비 유 지 비	25,779,000	

- 관련법규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2. 환경기초시설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4. 공원·녹지시설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6. 산업자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
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

1. 법령에서 “위탁해야 한다.”란 강행규정이나 “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”란 규정을 둔 경우
2.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
3.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·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경우
4.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경우
5.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,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

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(이하 “위탁기간”이라 한다)은 3년 이내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4.12.>

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2조(협약체결 등)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재협약대상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민간위탁의 목적
2. 수탁기관의 명칭(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) 및 주소
3. 위탁사무의 명칭·범위 및 내용
4. 위탁기간 및 조건
5.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
6.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
7. 종사자의 고용승계

- 8. 이용자·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
- 9.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
- 10. 그 밖에 군수가 협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,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22조(관리위탁 행정재산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21>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21>

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14.3.21>

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1>

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1>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. <개정 2014.3.21>

[제목개정 2014.3.21]